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12.4.18 (수) 09:30

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 
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송장섭

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 
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윤성옥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4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0일

3. 제안 이유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명시함은 물론 기본재산의 조성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중기센터의 주요사업 명시(안 제3조)

나. 기본재산의 조성(안 제4조)

다. 중기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검사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‘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’은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기본재산 조성 명시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